

제 호

## 영치증

성명:

주소:

건설기계의 종류:

건설기계의 등록번호:

- 위 건설기계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였습니다.
- 정기검사 명령,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(도) 과(팀)에 제시하면 즉시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해제합니다.
-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.

• 영 치 일 시: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시      분

• 단속공무원

소 속:      시(도)      과(팀)      성 명: 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:      )

시 · 도 지 사

직인